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4. 4. 2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60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5. 강남구청장(의약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보건소장 : 이종철)

가. 제안이유

-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전반

-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 및 입원 진료)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연계
-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기여)
-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홍보 등
-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정책 추진

○ 모집방법: 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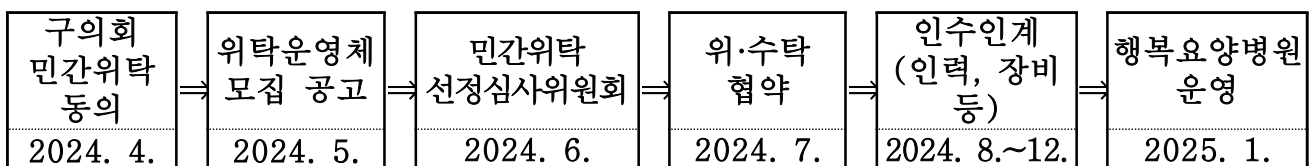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위탁기간: 5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선정절차



## 다.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의료법」 제33조제2항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 및 운영)

###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병원 시설관리(별도 사업자) 예산만 국비·구비 지원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안건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게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임.
- 강남구 현릉로 590길 60(세곡동521)에 위치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2014. 3. 31. 준공, 2014. 4. 14. 진료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시설 건립개요
  - 소재지: 강남구 현릉로 590길 60(세곡동 521)
  - 규모: 지하2층/지상5층, 71병실 307병상 (대지6,426.7㎡/건물18,607.34㎡, 주차 : 142대)
  - 건폐율: 51.94%(용적율166.22%)
  - 총사업비: 74,988백만원  
(건축비: 62,735백만원(BTL사업자)/토지비: 12,253백만원(강남구))
  - 시행사: (주)강남실버케어(BTL사업자)

- 시 공 사: 한화건설(주관사), 금호건설, 흥용종합건설

○ **협약체결**

- 일 시: 2012. 04. 20.
- 협약명: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14. 4. 1. ~ 2034. 3. 31.(20년)

○ **시설운영 인력: 17명**

총원	관리 소장	행정	시설				주차 경비	미화		
			소계	영선 기사	전기 기사	기계 기사		소계	반장	미화원
17	1	1	3	1	1	1	3	9	1	8

○ **위탁사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전반**

-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 및 입원 진료)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연계
-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기여)
-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홍보 등
-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정책 추진

○ 본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sup>1)</sup>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sup>2)</sup>

1)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

에 따라 위탁하려는 바 같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은 2018. 12. 13. 시행되었고 부칙<sup>3)</sup>에서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그동안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참여원과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구청과 수탁기관은 운영상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어오다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의료법인 참여원 협약체결>

- 일 시: 2011. 12. 20.
  - 협약 명: 강남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
  - 위탁기간: 2014. 4. 1. ~ 2019. 3. 31.(5년)
- 최초 소송은 2016. 6. BTL 시설운영비 이행 청구의 소 제기는 구청 패소, 2019. 5. 위탁기간 만료통보 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구청 패소, 2022. 7.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 취소 청구의 소 제기는 구청 승소하였고 2024.

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3) 치매관리법 <부칙>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12. 참여원측 상소 포기로 사실상 소송이 종결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4)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인 참여원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19. 3. 31. 이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지속적인 소송으로 이어져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가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아울러 현재까지 병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탁기관이 거부함에 따라 제한적인 자료만 제출 받았는 바 인수인계에 따른 정산이 마무리되면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치매관리법」 제5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위탁계약 갱신시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본 동의안은 그 동안 수탁기관과 수많은 갈등으로 소송까지 이어져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모든 소송이 종결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통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엄격한 검증과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끝.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60
----------	-----

제출연월일: 2024. 4. 15.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의약과

## 1. 제안이유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안건내용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시설개요

시설명	주소	층수	준공일	연면적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60 (세곡동 521)	지하2층~지상5층	2014. 3. 31	18,607m <sup>2</sup>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전반



-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 및 입원 진료)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영양서비스 연계
-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기여)
-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홍보 등
-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정책 추진

○ 위탁기간 : 5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다. 소요예산 : 비예산** ※병원 시설관리(별도 사업자) 예산만 국비·구비 지원

###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의료법 제33조2항

제33조(개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 위치도 및 운영현황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위치 및 전경



위치도



병원 전경



재활치료



병실 모습

□ 운영현황

○ 병실 현황

구분	계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병실 수	71실	7	8	26	30
병상 수	307병상	7	16	104	180

○ 환자현황

(단위 : 명)

입원현황 (2024. 4월 현재)	외래 (누계)	입원상담 (누계)
259	50,177	142,735

※ 병상 가동률 : 평균 86%